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염병 등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가사서비스 제공
금지·제한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97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감염병 등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가사서비스 제공 금지·제한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6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감염병 등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가사서비스 제공 금지·제한(안 제13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감염 증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해당 가사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질병자의 가사서비스 제공 금지·제한)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¹⁾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감염증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u>걸린 가사근로자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u> <u>②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가사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2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²⁾ 감염병 등 질병은 가사근로자의 서비스 제공 제한사유로 규

1) (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성인에 비해 전염병 등 질병에 취약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돌보미와 접촉한 뒤 감염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³⁾

이에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전염병 등 질병에 취약하다는 점, 가사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상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통해 전파 우려가 높은 감염병의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연합뉴스TV, “용인 ‘돌보미 접촉’ 남매 감염…해외유입·지역감염 계속”, 2020.7.13.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00713000700038>

매일경제, “아이돌보미 확진...부모들 불안불안”, 2020.2.25., <https://www.mk.co.kr/news/society/9220335> 등

다만, 제재조항 도입을 통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안 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2조 위반시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하고,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추가로, 자구 측면에서 안 제13조의2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참고로,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시행예정)」⁷⁾ 제10조의2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입법

4)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 제12조를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5)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6) (수정의견) “...가사근로자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가사근로자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7) 시행일 2026.4.23.

례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이돌봄 지원법」 유사입법례]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22.>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4. 22.>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22.>

④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22., 2025. 10. 1.>

[시행일: 2026. 4. 23.]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의미가 불분명한 규정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고, 안 제13조의2제2항은 가사근로자가 질병에서 회복된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